

Zoom-in Trade



- ▶ COVER STORY: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 ▶ FTA NEWS: FTA EXPO 2011 개최 2
-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의 특혜원산지규칙과 비특혜원산지규칙의 차이를 아시나요?.....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 WHERE IS GRACE CHANG?: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 7
- ▶ ABOUT WRITERS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강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동북지방 대지진 및 초대형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악재로 그 손실 복구 비용이 2,3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해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대지진의 후폭풍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일본 피해상황

세계 경제에서 부품조달체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계가 대지진의 영향으로 조업 중단 상태이다. 공장 등의 시설파괴, 여진 발생, 공급전력의 부족 등 제반 여건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조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동북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방사성 오염 우려로 인해 농업산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일본 대지진의 피해영향 (%)

구분	현재 피해발생	장기화시 피해예상	영향 없음	계	
전체	9.3	43.0	47.7	100.0	
주요업종	여행업	72.2	16.7	11.1	100.0
	반도체	-	80.0	20.0	100.0
	금속	22.2	55.6	22.2	100.0
	기계	10.7	64.3	25.0	100.0
	전자	8.9	66.7	24.4	100.0
	물류	17.9	50.0	32.1	100.0
	섬유·의류	4.8	4.8	90.4	100.0
	시멘트	-	27.3	72.7	100.0

※ 상공회의소자료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대일 수출 282억 달러, 대일 수입 643억 달러로 수출 3위, 수입 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며,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합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직접 피해는 아직 9% 수준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태의 장기화로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500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업은 9.3%였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업이 43.0%로 나타나 일본 내 상황변화에 따라 절반 이상의 기업이 피해권에 들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된 피해유형으로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일본지역 수출·매출 차질'(58.3%)을 꼽았고, 장기화시 피해를 예상한 기업들은 '부품소재 조달 차질'(50.6%)을 꼽았다. '물류차질', '생산장비 수입차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일본 지진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전사고 심화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과 수출차질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과 거래가 끊긴 기업들을 지원할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미치는 예상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제품 핵심 부품 등의 공급 차질

첨단제품의 각종 핵심 부품 및 소재, 생산설비 등의 수입 비중은 대일 수입 전체 대비 93.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대지진 상황이 장기화 국면을 맞이한다면, 재고관리 능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부품 등의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가 힘들다는 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2. 농축수산물의 방사 오염

대일 수출입에서 농축수산물의 비중은 수출 26%, 수입 2.2%이다. 물류기능의 마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단기적으로 대일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전사고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표2> 피해발생 및 예상기업의 피해유형 (%)

구분	부품소재 조달차질	생산장비 수입차질	수출 및 매출 차질	물류차질	일본내 시설피해	기타	계
전체	46.0	5.9	31.7	14.4	1.5	0.5	100.0
현재 피해발생	25.0	2.8	58.3	11.1	2.8	-	100.0
장기화시 피해예상	50.6	6.6	25.9	15.1	1.2	0.6	100.0

※ 상공회의소자료

3. 환율 경쟁력 문제

엔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일본 대지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 엔화가치의 급등 및 원화가치의 약세 흐름이 맞물려 당분간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화가치의 강세는 단기적 현상으로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엔화가치 약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엔화가치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 관계는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4. 자본재 수출의 증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소비재의 대일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지진 피해로 인한 공장, 기반시설 등의 복구에 필요한 수요가 가시화되면, 철강, 석유제품, 건설자재와 장비 등 자본재의 대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화 영

hylee@customsservice.co.kr

FTA News

FTA EXPO 2011 개최

지난 3 월 2 일부터 4 일까지 3 일에 걸쳐 COEX 에서 “FTA 2011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한-미 FTA 와 한-EU FTA 발효에 앞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FTA 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는 한편 칠레, 아세안, EFTA, 인도 등 이미 발효된 FTA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FTA 체결국가 및 민간컨설팅 등 총 94 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하였다.

참가기관(기업)은 EU 와 미국을 비롯해 FTA 체결국가의 주한대사관이 참여한 “FTA 체결국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이 참여한 “FTA 기업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FTA 정보관”, FTA 컨설팅 제공을 위하여 관세법인 등이 참여한 “FTA 상담관”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한 “FTA 미래관”으로 구성·진행되었다.

특히 FTA 상담관의 경우 관세법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ERP 시스템을 담당하는 솔루션 구축업체도 참여하여 FTA 에 대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컨설팅 서비스도 실시하였다.

“방문업체의 FTA 관심분야 각양각색”

방문업체의 관심분야는 “FTA 일반에 대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

시스템” 등으로 FTA 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다양하였다.

특히, 한-EU FTA 의 잠정발효가 금년 7 월 1 일로 예정되어 있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필수 요건인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미 FTA 와 한-EU FTA 가 발효된 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은 물론 FTA 와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도 방문업체의 문의가 많아 그 만큼 방문업체의 관심이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발한 기업체의 방문 아쉬워...”

이번 FTA 박람회에 방문한 업체들은 FTA 의 활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는 체계적 FTA 활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한 업체들도 있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박람회를 찾는 기업체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 FTA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FTA 활용은 기업체의 몫”

정부는 향후 수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FTA 에 대한 국내 기업체들의 체계적인 활용을 돕고자 다양한 설명회 및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을 대한 기업의 필요성 인식과 자발적인 움직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FTA 시대의 기회”는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FTA 시대에서 기업체에게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일례로 국내 화장품 회사인 C 기업은 FTA 를 활용하기 전에 아세안 국가 수출시 높은 관세율로 인한 고관세로 해외 시장에서 단가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FTA 를 활용하였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평균 10%의 관세(연간 약 2 억원)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 화장품의 아세안 현지 가격경쟁력 상승과 매출증대로 이어졌다.

이처럼 FTA 시대에서 FTA 를 활용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는 반드시 FTA 활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급물품의 FTA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① 중국의 특혜원산지규칙과 비특혜원산지규칙의 차이를 아시나요?

중국의 경우에도 원산지규정에는 크게 특혜원산지규칙과 비특혜원산지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제 1 수출국으로서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함께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을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중국의 특혜원산지규칙과 비 특혜원산지규칙의 차이에 관한 해석(海关总署解读我国优惠原产地规则与非优惠原产地规则差异)”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법률근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이하 ‘원산지조례’라 약칭)라는 비특혜원산지규칙에 관한 주요 법률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혜원산지규칙은 별도의 법률형식이 아닌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관규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2. 적용원칙

특혜원산지규칙은 국가별 특혜(관세)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간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을 말하며, 비특혜원산지규칙은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규칙으로 최혜국대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원산지규칙 내용

특혜원산지규칙과 비특혜원산지규칙은 원산지를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공히 “완전획득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우리나라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이라고 번역)”과 “비완전획득기준”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4. 완전획득기준이란?

완전획득기준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이 수출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었거나 생산된 것을 의미한다. 식물(또는 농산물) 및 그 제품, 동물과 그 제품, 광물, 수산물 또는 해산물,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된 물품, 폐품 또는 회수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5. 비완전획득기준이란?

비완전획득기준이란 수출국에서 일부만 완성 또는 주요가공·생산과정만 거쳤거나 주요 부가가치 부분만 완성된 화물에 적용된다. 중국의 비특혜원산지규칙에 따르면 비완전획득기준에

관한 주요원칙은 실질적변형 기준이다. 해관총서에서는 상무부, 품질검사총국과 함께 2004년 《비 특혜원산지규칙에 있어서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세번변경준과 제조가공공정기준, 가격백분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현재 특혜원산지규칙에서는 비완전 획득 또는 생산에 관한 기준을 ①특정원산지기준 ②세번변경기준 ③ 지역가치구성기준(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부가가치기준’이라 칭함, 이하 통일함) ④공정기준(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특정공정기준’라 칭함, 이하 통일함)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6. 특정원산지기준

특정원산지기준은 현재 통일된 법률개념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체결하였던 자유무역협정 즉, 중국과 ASEAN, 파키스탄, 칠레간 체결한 FTA 와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규칙에서는 특정원산지기준과 세번변경기준, 구역가치구성기준, 공정기준 등 4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중국이 새롭게 체결한 중국-뉴질랜드 FTA 의 원산지규칙에서는 특정원산지기준에 세번변경기준, 구역가치구성기준과 공정기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특정원산지기준 체계는 특혜원산지규칙에서 원산지기준의 주요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 또한 WTO 가 비특혜원산지규칙을 규범화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7.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으로는 장이 변경되는 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등 몇 가지의 형식이 있다. 중국-칠레 FTA 원산지규칙에서는 장이 변경되는 기준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뉴질랜드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품목변경)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자목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8. 부가가치기준

중국-뉴질랜드 FTA 체결 전까지는 부가가치기준이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되는 기본 기준이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에 관한 규정은 거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중국과 ASEAN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부가가치기준은 중국과 ASEAN 이 원산지인 제품성분이 총 가치에서 40% 이상인 경우와 비자유무역국가 원산지인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치가 생산 또는 획득제품 FOB 가격의 60%가 초과되지 않으면서 최후 생산공정이 아시아국가의 국내에서 완성된 경우이다. 반면에, 중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부가가치기준은 비 원산국의 재료성분이 55%(최빈국일 경우에는 65%까지)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공정이 자국에서 완성된 경우이며, 중국과 파키스탄간의 FTA 는 원산지성분 비율을 40% 이상 하고 있고, 중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50% 이상을, 중국-뉴질랜드 FTA 에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화물은 40%기준만 부합되면 되지만 어떤 것들은 50%가 되어야 하는 등 차이가 많다.

9. 운송에 따른 요구(주의)사항

특혜원산지규칙은 일반적으로 모두 수출회원국이 직접 수입회원국까지 운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접운송 기준 역시 분명한 한계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비특혜원산지규칙은 운송단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 직접운송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원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구를 통과하지 않는

운송으로 직접운송의 기본형식이 된다. 둘째로는 운송도중에 회원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구를 통과하지만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운송의 경우는 반드시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데 즉 지리적인 원인 또는 운송수요에 따라 부가가치에 영향을 주는 처리가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무역 또는 소비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중국-칠레, 중국-파키스탄, 중국-뉴질랜드와 같은 일부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 수화인이 수입국 해관의 요구에 따라 경유국가 또는 지구의 해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10. 수출입신고에 따른 요구(주의)사항

특혜원산지규칙에 있어 송수화인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통관신고의 기본요건이 된다. 즉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상응하는 협정 하에서의 특혜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특혜원산지규칙에서는 해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반덤핑과 반보조금 및 보장조치를 실시하는 수출입화물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칠레 FTA 에서는

“칠레가 원산지인 화물로서 가격이 600 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파키스탄이 원산지인 수입화물로서 FOB 가격이 200 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고 되어 있다.

관세청
부산국세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지난 2월에 분유,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관세율을 인하할 것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제역 피해의 확산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필품의 가격과 서민 생계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3 월에도 할당관세 대상품목의 관세율 인하 및 물량증대를 추가 개정하였으며,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할당관세 신규 대상품목¹

[관세율 추가인하(24 개)]

▶ 할당세율 0%(21 개): 산란용병아리(9%), 냉동 생크림(36%), 버터(40%), 치즈(36%), 달걀가루(27%), 감자분(8/5.4%), 코코넛분말(8%), 유당(20%), 조제코코아(8%), 코코아원두(2%), 가공 버터(8%), 동잔재물(2%), 견사(4%), 견방사(4%), 면사(2%), 재생/반합성스티플섬유(레이온 1%, 리오셀 2%), 귀금속회(2%), 페로크롬(2%), 페로실리콘(2%), 알루미늄괴(1%), 티타늄괴(2%)

▶ 할당세율 3%(2 개): 석유코크스(5%), MTBE(8/5.5%)

▶ 할당세율 24%: 조제땅콩(50/40%) (1 개)

□ 할당관세 추가 대상품목(기존 10 개)

[물량증량(2 개)]

▶ 할당세율 0%: 냉동삼겹살 (1 만톤 → 6 만톤), 분유 (전지, 1 천톤 → 4 천톤 / 탈지, 8 천톤 → 26 천톤) (2 개)

[관세율 추가인하(8 개)]

▶ 할당세율 0%(7 개): 가공용옥수수(할당 1%), 대두박(할당 1%), 올리브유(할당 4%), 해바라기 씨유(할당 4%), 유채유(할당 4%), 옥수수유(할당 4%), 포도씨유(할당 4%)

▶ 할당세율 2.5%(1 개): 대두유(할 4%)

□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 개 품목의 경우 금년 말까지 적용하고, 분유는 당초 '11. 6. 30 일에서 금년말로 적용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달걀가루, 면사 등 15 개 품목은 '11. 6. 30 일까지 우선 적용 후, 수입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011 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으로 하기 5 개 품목에 대한 HS CODE 가 변경되었다.

□ 갑오징어

① Cuttle fish with shrimp, frozen, ② Cuttle fish, frozen / THAILND, ③ Seafood mix, frozen / THAILND 에 대하여 종전에는 0307.49-1010 호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0307.4 호에 분류되는 갑오징어의 종은 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 마크로소마,세피올라종 3 종류만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갑오징어의 종의 표현 없이 포괄적으로 회신한 기존 결정 3 건에 대하여는 폐지하였다.

□ 전자담배

①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 Cartridges), ②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out Cartridges), ③ 전자담배용



부품(기화기, 배터리, 마우스 피스)에 대하여 기존에는 해당 품목을 제 2403.99-9000 호(담배 대용물) 또는 제 9614.00-1000 호(깍연용 파이프와 그 부분품)에 분류하였으나, ①·②번 물품 제 8543.70-9090 호, ③번 물품 제 8543.90-9090 호에 분류하여 수입시 기본세율 8%(종전 40% 또는 8%)가 적용된다.

□ 주형 베이스

Steel Plates for block making machines (벽돌생산용 철받침), Steel Pallet High Tensile Steel/ Block making Steel Pallets 는 콘크리트 블록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성형할 수 있도록 고도의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가공된 물품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제조하는 성형기의 주형(몰드) 하단부에 투입되어 몰드의 밀받침을 형성하는 물품이며, 본건 물품 없이 주형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주형베이스(8480.20-0000 호)에 분류하여 수입시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 LCD MODULE

TFT LCD MODULE 의 경우 물품의 제시자료상

제 8471 호의 컴퓨터 모니터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완성된 컴퓨터 모니터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가격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성된 액정모니터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8528.51-1000 호에 분류하여 수입시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된다.

□ 직선형 볼베어링

Linear Motion Ball Bearing(직선형 볼베어링)에 대하여 WCO 사무국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국제적 특개 운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동해설서 제 8482 호에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호에는 분류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어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을 갖는 직선형 베어링인 본 물품은 "볼베어링(8482.10-1000 호)"에 분류하였으며, 수입시 8%의 기본관세가 적용된다.

□ 수출입공고 중 개정고시

대만과의 자동차분야에 대한 수출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제한품목에서 일부 품목이 삭제되었다.

▶ 승용자동차 (HS 870321, HS 870322, HS 870323, HS 870331, HS 870332, HS 870333, HS 870390)

▶ 화물자동차 (HS 870421, HS 870431)

▶ 엔진을 갖춘 차시 (HS 870600)

▶ 기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HS 870899)

따라서 2011년 2월 8일부터는 해당 품목을

대만으로 수출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¹ 신규 품목 () 안은 현행세율로 기본/실행세율 순임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수입물품의 생산지원에 있어 생산 시 발생된 소모량의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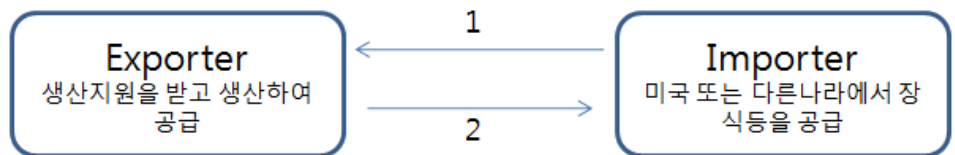
(HQ 547108 1999.09.10)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 거래사실(Facts)

1. 거래형태

- 1) 수입자 I(Importer-KSI)는 미국 또는 외국에서 원단과 장식을 주문함.
- 2) 주문된 원단과 장식은 아시아의 여러 공장에 공급됨.
- 3) 아시아의 여러 공장들은 공급된 원단과 장식으로 CMTQ(자르고, 만들고, 장식하고, 할당량을 판매)방식으로 공급함. (이때 손모량이 발생됨)
- 4) 수입자는 완성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함.
- 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MTQ charge 에 수입자가 계산한 원단과 장식가격을 포함한 가격이다.



손모량 발생

2. 손모량 산정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 1) 수입자는 손모량의 계산에 있어서 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치(컴퓨터를 사용하여)를 근거하여 손모량을 계산하였음.
- 2) 손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운영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회계기록만큼 정확하므로 제시된 손모량은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 투입된 원단만을 생산지원비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이러한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원단과 색상은 변할지 모르지만 스타일은 변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함.

- 4)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손모량은 28.37% 임.
- 5) 세관에서는 실제 손모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과거의 경험치보다는 회계기준에 맞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6) 세관에서는 과거의 경험치는 현실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함.
- 7) 세관에서는 회계기준에 입각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음
- 8) 수입자 또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손모량을 입증하기 위한 경험치외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음.

□ 쟁점(Issue)

1. 수입자가 산정한 손모량의 계산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가?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생산지원비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어도 무방한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가. 관세법 1401a (B).(1).(C)

"과세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 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5 가지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The preferred method of appraisal is transaction value, defined a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merchandise when sold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plus five statutory addition, including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19 U.S.C. 1401a(b)(1)(C).

나. 관세법 1401a (h)(1)(A)

"생산지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물품 구매자가 당 해 물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것을 말함.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 1) 재료, 구성요소, 부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사용되는 물품
-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것
-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4)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기술,

설계, 도안, 공 예, 디자인 등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

2. 관련 예규

가. General Notice (Customs Bulletin, December 20, 1995)

1995 년 12 월 20 일 세관 공지하고 1996 년 1 월 29 일 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General Notice 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생산기간 동안 발생한 손모량은 그 수입물품의 관세 평가에 포함 되어야 할 생산지원 비용을 구성할 수도 있음 (본 건은 이 견해를 채택하기 이전에 수입이 되었음.)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 되었던 당시 유효했던 견해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지 아니한 손모량은 관세법에 따른 '생산지원'이 아니므로 그런 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관세 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세관은 생산지원 비용의 평가와 관련한 결정이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맞게 이루어진 '생산지원' 공급자의 회계기록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초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그런 수치화된 증거를 거래 당사자의 회계 및 재정기록이 없다고 해서 다른 관련자료를 검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

나. HRL 546234 (1997. 10. 7)

구매자용 송장에 따르면 CMT 와 원단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는 각 수입건마다 의류 각 스타일에 맞게 준비된 재단 표식에 기초한 각 수입분의 원단 손모율을 반영하였음.

독립 공인 산업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수입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컴퓨터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손모량의 합리적인 비용과 가치를 나타낸다고 인정했다.

손모량 결정을 위한 방법인 컴퓨터를 이용한 표식은 그 자체로만 보면 원단 손모량의 금액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임.

3. 쟁점검토

counsel 이 제안한 "평균 효율"은 모든 수입상품에 대한 이용 및 효율을 반영하지 않음.

수입자의 counsel 이 진술했듯이 스타일 과 그에 따른 표식들은 매년 바뀌지 않지만 색상, 문양과 원단은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손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시된 자료로 보아, "평균 효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수입제품의 원단 이용과 효율을 대표할 수 없다.

"평균효율"은 1995 년동안 CMTQ 베이스로 선적된 859,321 점의 의류생산에 사용된 원단 손모량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 결정(Holding)

HRS 546234 에 따라 원단의 생산지원비용은 수입자가 만든 원단 표식에 반영된 원단 손모량에 기초하여 계산될 수도 있음.

그러한 자료는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수입제품에 대하여 사용된 표식이 반영하는 원단 손모량을 대표해야만 함.

"평균효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수입제품의 원단 손모량을 대표하지 않음.

수입자는 손모량 계산에 컴퓨터 표식사용에 따른 손모량을 사용할지도 모르나 각각의 제품별 손모량을 산정하여야 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식사향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



장승희 대표 관세사

일본의 대지진 이후 동쪽으로 이동하였던 한반도가 제자리로 복귀하고 있다 합니다. 0.9cm 이동한 마라도는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고, 2cm 정도 이동한 서울도 0.8cm 정도 돌아왔으나 가장 많이 움직인 독도는 5.1cm 이동한 자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합니다.

제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삶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신한이 지금 서있는 자리가 제자리인지 둘러봅니다. 외부의 힘에 밀려 아니 세상과 타협하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와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많이 밀려와 제자리로 돌아갈 힘이 소진된 것은 아닌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건지....?

이번 cover story 는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제목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고객들께서 그 영향을 파악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실행을 하고 계실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아직 숙지하지 못하신 고객들께서는 숙지하시고 경영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월초 FTA EXPO 2011 이 COEX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신한관세법인에서도 booth 를 설치하여 많은 분들께 FTA 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PO 자체의 홍보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 담당자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 수많은 설명회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기업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booth 를 찾아와 격려하여 주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에서는 '중국특진'을 연재 기획 시리즈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내 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에 초빙학자로 파견되었었고 현재 부산세관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으로 중국관세무역연구회의 간사장을 맡고 계신 임창환 세관장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편은 '중국의 특혜원산지 규칙과 비 특혜원산지 규칙의 차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는 '수입물품의 생산지원과 관련하여 생산 시 발생된 소모량의 산정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산정은 이전가격과 연관이 되어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이 현재 서있는 자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혹 제자리가 아닌 곳에 와있으면 강력한 복원력을 발휘하여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의 중심을 지켜가며 더 앞선,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화 영 관세사 (hy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1 부
- 관세환급 전담 관세사

FTA News-

FTA EXPO 2011 개최



최 대 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원산지관리사 수석합격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①



임 창 환 세관장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US Rulings 연재②

수입물품의 생산지원에 있어 생산시 발생된 소모량의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방식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